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04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권칠승 · 박균택 · 김기표
한민수 · 윤준병 · 임미애
박정현 · 김준혁 · 이상식
송재봉 · 윤종균 · 김영환
박지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은 8회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통신기술의 한계 등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의 통신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현실에서는 20명 이하의 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시간차를 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100명

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최신 통신기술의 수준을 신속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 후단 중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원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기준인원수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하여야 한다.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